

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(제20조제6항 관련)

1.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.
 - 가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-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
 - 라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·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
 - 마. 「광업법」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「초지법」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
 - 바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·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
 - 사. 공장의 증·개축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(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- 아. 법 제10조제10호,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- 자.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
2.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(이하 “허가신청지”라 한다)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(이하 “기존허가지”라 한다)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(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)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.
3. 제2호에서 기존허가지의 면적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한 면적(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

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
4.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인하여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는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.
- 가. 「철도건설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
 - 나.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
 - 다. 「하천법」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 및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
 - 라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 - 마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(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)
 - 바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(이하 “주간선도로”라 한다) 또는 보조간선도로
 - 사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
 - 아.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주간선도로 또는 「도로법」 제8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

※ 비고

산림청장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